

현지법인에 대한 담보자산의 집행 절차와 가능성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운영자금 혹은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 기업소유의 부동산 등 각종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IMF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중국투자의 모기업이 도산하거나 자금차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지기업 소유 자산의 담보권 설정과 집행 문제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의 채권확보 방법은 보증, 저당, 질권, 유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하에서는 중국에서의 담보제도와 현황 그리고 중국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담보취득 및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담보물의 저당가능 여부 확인 필요

현재 중국은 민법통칙에 보증, 저당, 유치 등 몇가지 담보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통칙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만 기록하였기 때문에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화의 진전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 6월 담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루는 실무법규로 '담보법(擔保法)'을 제정,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1996년 10월에는 외국인의 담보설정 여부에 관한 법률로 '중국내기구의 대외담보관리법(境內機構對外擔保辦法)'이 시행되었고, 1997년 1월부터 담보권 집행절차와 관련된 법규로 '경매법(競賣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대상인 토지사용권의 담보권 설정에 대해서는 담보법 이외에 토지관련 법규인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재양도 잠정조례(城鎮國有土地使用權出讓和轉讓暫行條例)' '도시부동산관리법(城市房地產管理法)' 등에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여러 가지 채권을 담보하는 방식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확실한 담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저당(抵押)이다. 통상 저당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저당물로 제공하여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말하며, 중국에서도 개념은 같다.

다만, 중국 담보법에서는 저당물 제공 여부가 가능한 재산을 명확히 하고

있어 금융기관 혹은 자금제공자가 사전에 차입자에 대한 동산과 부동산에의 가치 평가시 먼저 저당이 가능한 재산인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에 대한 저당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국 저당목적물의 저당설정 가능 여부 구분

	저당 가능 재산	저당 불가능 재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당권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기타 지상 정착물 · 저당권설정자가 처분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 건물 및 기타 지상 정착물 · 저당권설정자가 법에 따라 경영위탁을 받고 저당권자가 이에 동의한 황폐한 땅(황폐한 산, 황폐한 물도랑, 황량한 언덕, 황량한 개펄 등)의 토지사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소유권(국가소유, 집체소유) · 경지, 주택지, 자영농지, 자영산 등 집체소유의 토지사용권(다만, 「擔保法」 제34조 제5호 및 제36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사용권은 저당 가능)
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당권설정자가 소유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기계, 교통운수도구 및 기타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학교, 유아원, 병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의 교육시설, 의료시설과 기타 사회공익시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기타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사용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는 재산 · 법에 따라 차압, 압수되었거나 감독관리받고 있는 재산 · 법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기타 재산

법률상 외국인의 저당설정 및 집행은 가능

문제는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중국 담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나이다. 담보법을 근거로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중국내기구의 대외담보관리법'에 따르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지방정부 소재 관련기관(세관, 공상행정관리국, 외환관리국 등) 및 공장 설립시 승인기관인 중앙정부(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마저도 현지 기관의 배타적인 업무처리로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의 구체적인 담보취득 절차를 보면 우선 대상물건에 대한 상품검사국의 잔존가액의 평가를 거친 후 담보물에 대한 지역 세관의 동의 및 양 당사자간 담보계약을 체결한다. 담보계약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되면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하고 지역 외환관리국에 대외담보 등기절차를 밟으면 담보취득절차가 마무리된다. 근저당 설정 등 채권행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담보계약을 설정함과 동시에 외환관리국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계약서상 채권행사 방법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보권 설정시 준비서류는 중국어로 번역하여 공증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영사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수입설비를 담보로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세관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도입은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세관의 동의는 이러한 비관세 설비 도입후 일정기간 내에(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5~6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청산될 경우, 중국내 부채를 우선적으로 변제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실상 외국인의 담보권 실행은 상당히 어려움

한국 모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중국 현지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 저당계약 당사자는 모기업에의 대출금융기관과 중국 현지법인이다. 이는 중국현지법인 자체의 채무가 아닌 한국 모기업의 채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중국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당계약체결 후에는 저당 및 대외담보 관련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어도 채무를 상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담보권자는 피담보인과 협의하여 담보물로 변제받거나, 담보물을 경매, 판매한 대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담보권 행사시 피담보인의 동의를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외국(법)인이 중국에서 승소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며, 설사 승소하더라도 소송제기에서 실제 집행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소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 소송기한은 보통의 민사소송기한(일심 반년, 이심 3개월 → 법정기한)과 동일하며, 소송으로 충분한 채권회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송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소송비만 낭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계 금융기관이 중국 현지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저당설정금액은 대출금액의 130%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국 현지법인의 한국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주담보를 보완하는 첨담보에 불과하며, 중국 현지법인의 자산만을 주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처럼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 현지법인 담보 설정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이유는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현재 중국 내에서 외국인의 담보권 설정 및 집행은 가능하나 사실상 이의 집행을 통해 대출자금을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피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사회제도나 구조는 사회주의의 속성이 그대로 베어있다. 현재 매일 지방정부의 법규까지 합해 수십 안건의 법률이 쏟아져 나올 만큼 '법률의 홍수' 시대에 살고있으나 전반적인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며, 법률절차와 집행에 있어서 객관적이라는 인식을 갖기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 중국은 개도국의 외국인투자 가운데 약 2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을 정도로 세계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의 현지기업에 대한 담보권 집행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이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점진적인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도 점차 해소되겠지만 당분간은 외국인이 중국법에 호소하여 실익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北京事務所】